

의안번호	2212056
의 퇴 인	서영교 의원
회 답 일	2025. 8. 14.
추 계 번호	25F430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 2년 연장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등 감면조항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할 경우, 지방세는 2026년 7.9억원, 2027년 7.3억원 등 2026년에서 2027년까지 2년간 총 15.2억원(연평균 7.6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
- 이전공공기관이 이전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안 제81조제1항): 2년간 -12.6억원(연평균 -6.3억원)
 - 이전공공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임직원 등의 해당 지역 거주목적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안 제81조제3항): 2년간 -2.6억원(연평균 -1.3억원)
 - 이전공공기관의 법인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안 제81조제2항)은 감면실적이 발생하지 않거나, 100만원 미만임을 고려하면 개정안에 따라 지방세 감면규정의 적용기한이 연장되더라도 세수감소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가정

[표 1]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지방세, 2026~2027년

(단위: 억원)

	2026	2027	누적	연평균
이전공공기관의 이전목적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안 제81조제1항)	-6.3	-6.3	-12.6	-6.3
이전공공기관의 법인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안 제81조제2항)		미첨부	1호	
이전공공기관의 임직원 등의 거주목적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안 제81조제3항)	-1.6	-1.0	-2.6	-1.3
합 계	-7.9	-7.3	-15.2	-7.6

Ⅱ.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81조제1항 (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 이전공공기관의 이전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 적용기한: (현행) 2025. 12. 31. → (개정안) 2027. 12. 31.	
2	안 제81조제2항 (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 이전공공기관의 법인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 적용 기한 연장 － 적용기한: (현행) 2025. 12. 31. → (개정안) 2027. 12. 31.	
3	안 제81조제3항 (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 이전공공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임직원 등의 해당 지역 거주목적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 적용기한: (현행) 2025. 12. 31. → (개정안) 2027. 12. 31.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81조제1항 (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	
2	안 제81조제2항 (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	○ 세수감소 규모는 연평균 10억원 미만일 것으로 예상되어 개정안에 따른 비용추계는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3	안 제81조제3항 (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은 2025년 하반기 중 통과되어 감면의 세수효과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발생한다고 가정

□ (안 제81조제1항) 이전공공기관이 이전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다음과 같은 가정 하에 추계

- (취득세) 2019~2022년 감면실적이 평균 210만원으로 감면규모가 작으므로 2023년 감면실적이 유지될 것으로 가정
 - 2023년 취득세 감면액: 1.5억원
- (재산세) 2019년 51.2억원에서 2023년 4.8억원으로 최근 5년간 감면액이 큰 폭으로 감소하여 2023년 감면실적이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
 - 2023년 재산세 감면액: 4.8억원
- (안 제81조제2항) 이전공공기관의 법인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규정은 최근 감면실적을 감안할 때, 감면규정 적용기한을 연장하더라도 세수감소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가정
 - 세수감소 규모는 연평균 10억원 미만일 것으로 예상되어 개정안에 따른 비용추계는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 2023년 등록면허세 감면액: 12.5만원
- (안 제81조제3항) 이전공공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임직원 등이 해당 지역의 거주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유지될 것으로 가정 하에 추계
 - 최근 5년간 취득세 감면실적 연평균 증감율: -38.5%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이전공공기관이 이전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안 제81조제1항)

(1) 제도개요 및 추계방법

- (제도개요)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 감면 적용기한: (현행) 2025.12.31. → (개정안) 2027.12.31.
- 감면율: 취득세 50%, 재산세 50%(5년간)
- (추계방법) 이전공공기관이 이전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다음과 같은 가정 하에 추계
 - (취득세) 2019~2022년 감면실적이 평균 210만원으로 감면규모가 작으므로 2023년 감면실적이 유지될 것으로 가정
 - 2023년 취득세 감면액: 1.5억원
 - (재산세) 2019년 51.2억원에서 2023년 4.8억원으로 최근 5년간 감면액이 큰 폭으로 감소하여 2023년 감면실적이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
 - 2023년 재산세 감면액: 4.8억원

[표 2] 이전공공기관의 이전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실적 추이: 2019~2023년
(단위: 억원)

	2019	2020	2021	2022	2023
감면실적	51.2	37.1	23.5	17.4	6.3
－ 취득세	0.04	0.04	0.0	0.0	1.5
－ 재산세	51.2	37.1	23.5	17.4	4.8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세통계연감」, 각 연도

(2) 추계결과

- 개정안에 따라 이전공공기관이 이전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할 경우, 지방세는 2026년 6.3억원, 2027년 6.3억원 등 2026년에서 2027년까지 2년간 총 12.6억원(연평균 6.3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표 3]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2026~2027년, 취득세 및 재산세

(단위: 억원)

	2026	2027	누적	연평균
이전공공기관의 이전목적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안 제81조제1항)	-6.3	-6.3	-12.6	-6.3
- 취득세	-1.5	-1.5	-3.0	-1.5
- 재산세	-4.8	-4.8	-9.6	-4.8

나. 이전공공기관의 법인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안 제81조 제2항)

- (제도개요) 이전공공기관의 법인등기에 대해 등록면허세 면제
 - 감면 적용기한: (현행) 2025.12.31. → (개정안) 2027.12.31.
- (추계결과) 2023년 등록면허세 감면실적이 12.5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감면 규정의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감소 규모는 연평균 10억원 미만일 것으로 예상되어 개정안에 따른 비용추계는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표 4] 이전공공기관의 법인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실적 추이: 2019~2023년

(단위: 억원)

	2019	2020	2021	2022	2023
감면실적	0	0	0	0	0.00125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세통계연감」, 각 연도

다. 이전공공기관의 소속 임직원의 거주목적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안 제81조제3항)

(1) 제도개요 및 추계방법

- (제도개요) 이전공공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임직원 등이 해당 지역에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1가구 1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 감면 적용기한: (현행) 2025.12.31. → (개정안) 2027.12.31.

○ 감면내용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00% 면제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102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75% 감면
- 전용면적 102제곱미터 초과 13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62.5% 감면

□ (추계방법) 이전공공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임직원 등이 해당 지역의 거주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 수효과는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감율이 유지될 것으로 가정 하에 추계

- 최근 5년간 취득세 감면실적 연평균 증감율: -38.5%

[표 5] 이전공공기관 임직원의 거주목적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실적 추이: 2020~2023년

(단위: 억원)

	2019	2020	2021	2022	2023
감면실적	48.3	31.2	24.9	19.9	6.9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세통계연감」, 각 연도

(2) 추계결과

□ 개정안에 따라 이전공공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임직원 등의 거주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할 경우, 지방세는 2026년 1.6억원, 2027년 1.0억원 등 2026년에서 2027년까지 2년간 총 2.6억원(연평균 1.3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표 6]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2026~2027년, 취득세

(단위: 억원)

	2026	2027	누적	연평균
이전공공기관의 임직원 등의 거주목적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안 제81조제3항)	-1.6	-1.0	-2.6	-1.3

IV. 부대의견

☐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2과	장설희	백경엽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장설희	02-6788-4836	shjang@assembly.go.kr